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 벌금 · 징역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와 벌금 및 징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의 위반사항”에 있어 조치기준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관계서류의 작성에 대해 법조항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 대여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

제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 받은 자는 당해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위반행위 : ①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②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나. 조치기준 :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①항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②항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2. 질병자의 근로 금지 규정 · 제한 등 위반 (제45조 제1항, 제2항)

-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가. 조치기준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나. 부과금액 : 1,000만원이하의 벌금

3. 근로시간연장 제한위반 (제46조)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조치기준 :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나. 부과금액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벌금)

4. 무자격·무면허·무기능 또는 무경험자 취업제한 위반 (제47조 제1항)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조치기준 :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단, 불이행으로 인하여 제2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나. 부과금액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 ①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 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항의 규정은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준용한다.

가. 조치기준 : ① 심사대상의 공정율이 30% 미만시는 즉시 제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단, 제2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② 심사대상의 공정률이 30% 이상시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고 규칙 제1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 명령

나. 부과금액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벌금)

다. 관계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 (법 제48조 제3항)

건설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위반행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나. 조치기준 : 1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다. 부과금액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조치명령 위반 (제48조 제4항)

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가. 조치기준 : 1차 경고 후 불이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 나. 부과금액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벌금)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48조 제5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가. 위반행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동 계획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나. 조치기준 : 즉시 확인을 받도록 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다. 부과금액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9. 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가. 위반행위 : 안전보건진단명령을 위반한 경우
- 나. 조치기준 :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 부과금액 :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라. 관계서류 : 안전·보건진단실시 관계철

10. 안전·보건 진단거부·방해·기피 또는 근로자대표 입회요구시 불응(법 제49 조제2항)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가. 조치기준 : 1차 불이행시 경고조치하고, 2차 불이행시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 나. 부과금액 : 1,000만원이하의 벌금

11.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법 제49조의2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01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가. 조치기준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행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부여하여 제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 나. 부과금액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 관계서류 : 공정안전보고서


1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절차 위반(법 제49조의2 제2항)

사업주는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가. 위반행위 :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②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 나. 조치기준 :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①항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②항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13.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위반(법 제49조의2 제3항)

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가. 조치기준 : 1차 경고후 불이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 나. 부과금액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제공 : 서울지회 동부출장소 조영수 소장)